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월 23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강화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제2항 중 “법 제38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의2 및 제3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 ① (생략) ② <u>법 제38조제4항</u> 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12조의2 및 제38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수도권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21